KPMG

# Customs Alert

2026년8월



## 대외무역관리법 시행을 위한 신규 시행령이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7월 22일, 베트남 정부는 대외무역관리법의 세부 시행 및 지침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292/2026/NĐ-CP호(이하 "Decree 292")를 공포하였습니다. 본 시행령은 2018년 5월 15일자 시행령 제69/2018/NĐ-CP호를 대체하며,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Decree 292에는 수출입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부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수출 목적의 일시수입 및 재수입 목적의 일시수출** – Decree 292는 일시수입 후 재수출 및 일시수출 후 재수입 거래에 대해, 각 선적 건별로 최대 2회까지만 기한 연장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에 따라 수출입되는 물품은 형태, 용도 또는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어서는안 되며, 다른 물품의 생산 또는 제조에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환적(Transshipment) 사업** – Decree 292는 환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FDI)도 환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특히, 물품이 베트남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도 환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외국 거래처를 위한 가공** – Decree 292는 외국 거래처와 체결하는 가공계약(임가공계약, toll manufacturing)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공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잔여 원부자재 및 제품의 처리 방식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원부자재 소요량 명세서(Bill of Materials, BOM)의 변경 및 손실·소모율(Loss/Wastage Rate)의 변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요건도 규정하였습니다.

4. **수출입 금지 품목 목록** – Decree 292는 수출입 금지 품목 목록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E-cigarettes), 가열식 담배 제품(Heated Tobacco Products), 원석 다이아몬드(Rough Diamonds), 그리고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을 통해 제조 생산된 물품이 수출입 금지 대상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 2026 KPMG Limited, KPMG Tax and Advisory Limited, KPMG Law Limited, KPMG Services Company Limited, all Vietnamese on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5.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 – Decree 292는 자유판매증명서(CFS)에 대한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한 CFS는 영어로 발급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발급된 경우에는 베트남어 번역본을 첨부하고 수입업자가 확인(인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 물품에 대한 CFS의 유효기간은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 KPMG 권고사항

Decree 292는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특정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처리 기한과 세부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특수한 형태의 수출입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의 법규 준수 의무를 한층 높이려는 규제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외국 거래처와의 가공거래, 일시수입 후 재수출, 일시수출 후 재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특히 외국인투자기업(FDI)은 신규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공급망 및 관련 내부 업무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시행령 발효 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및 수출입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자문이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KPMG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 us

**Email:** info@kpmg.com.vn

### Korean Desk

**Kang Shinmok** (Ho Chi Minh City)
Director
E shinmokkang1@kpmg.com.vn

**Park Seung Hwan** (Hanoi)
Senior Manager
E seunghwanpark1@kpmg.com.vn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Limited, KPMG Tax and Advisory Limited, KPMG Law Limited, KPMG Services Company Limited, all Vietnamese on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Scan to visit our website:** kpmg.com.vn